

신기후체제 출범과 향후 과제

2015.12

목 차

I. 파리 기후총회 (COP21)주요 결과물

II. 파리 협정(PA) 주요 내용

III. 신기후협상 출범 배경

IV. 그간의 협상 경과

V. 평가

VI. 향후 계획

I. 파리기후총회(COP21) 주요결과물

3

1. 파리 협정 (Paris Agreement)

-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협정으로, 주요 요소별로 적용될 주요 원칙과 방향을 담은 법적 구속력있는 합의

2. 총회 결정문 (COP21 Decisions)

- 합의문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및 구체적 작업계획을 담은 문서

3. 각국의 INDC

- 2015.10.30일,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10.1일까지 제출된 INDC의 총체적 영향을 분석한 INDC 종합보고서 발간
- 2015.12월 현재, 총 188개국이 INDC 제출

4. Lima Paris Action Agenda

- 정부를 비롯, 비정부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기후행동 선언문 또는 실천 계획 (별도 웹사이트 운영)

II. 파리 협정 주요내용 (1)

4

1. 파리 협정 개관

- 전문 및 29조항으로 구성
- 법적 구속력있는 합의로, 당사국들의 컨센서스로 채택

2. 목표

- 2도 목표, 1.5도 목표 지향
-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기후회복력 증진
-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탄력적 개발을 위한 자원 조성

II. 파리 협정 주요내용 (감축)

5

3. 감축 (Mitigation)

- **목표:** 최대한 조속히 전지구적 최대배출년도 달성
- **의무:**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감축 목표(NDC) 5년마다 제출
- **구속력:** 목표 제출은 의무로 하되,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담보
- **진전원칙:** 차기 감축 목표 제출시,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
- **형태:** 선진국은 경제전반에 걸친 절대적 (economy wide absolute) 감축방식을 유지, 개도국은 경제전반에 걸친 감축방식 채택 지향
- **시장:** 국가간 자발적 연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 허용

II. 파리 협정 주요내용 (적용, 손실과 피해)

6

4. 적용 (Adaptation)

- **목표**: 복원력(resilience) 제고와 취약성 감소
- **의무**: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
- **상호협력**: 정보, 우수관행 및 경험 공유 강화

5. 손실과 피해(Loss and Damage)

- 손실과 피해의 중요성 인정
- 기존 바르샤바 메커니즘 등을 통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이해, 행동 및 지원 강화

II. 파리 협정 주요내용 (기후재원)

7

6. 기후 재원 (Climate Finance)

- **의무**: 선진국은 재원 공여 및 조성에 선도적 역할 수행, 여타 국가는 자발적 참여
- **재원확대**: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재원 공여 및 조성 규모 확대
 - ※ 결정문에 연간 천억불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
- **정보제공**: 선진국은 공공재정 지원 관련, 사전 및 사후 정보 격년 제출, 여타국의 자발적 제출권고
- **메커니즘**: 기후변화협약 하 재정메커니즘이 파리 협정 하 메커니즘으로 역할 지속

II. 파리 협정 주요내용 (기술, CB)

8

7. 기술 개발과 이전 (Technology)

- 감축 및 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 이전의 중요성에 대한 장기비전 공유
-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수립

8. 역량 배양 (Capacity Building)

- 감축과 적응 행동, 기술과 자원 활용능력 제고 목표
- 지역, 양자, 다자 차원의 협력 추진
- 역량배양을 위한 파리 위원회 설립 (결정문)

II. 파리 협정 주요내용 (투명성, GS)

9

9. 투명성 체제 (Transparency)

-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유연성 인정
-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도국들의 역량배양 지원

10. 이행점검 (Global Stocktake)

- 2023년부터 5년단위로 파리 협정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실시

※ 결정문을 통해 사전 이행점검 성격의 facilitative dialogue를 2018년에 실시기로 규정

II. 파리 협정 주요내용 (이행, 발효 등)

10

11. 이행과 의무 준수

- 이행촉진적, 비적대적, 비징벌적 성격의 의무준수체제구축

12. 발효 요건

- 55개국 및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55% 이상 배출하는 국가 비준시, 동 협정 발효

13. 서명

- 2016.4.22일부터 1년간 각국에 서명 개방 (2016.4.22일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 개최 예정)

III. 신기후협상 출범 과정 (1)

1. 교토의정서(1997) 체제의 붕괴

- 2001년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
- 2011년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
- 2012년 일본, 뉴질랜드, 러시아의 2차 공약 기간 불참선언

2. 2009년 코펜하겐 기후총회에서의 Post-2012 체제 출범 좌절

3. 2010년 칸쿤 회의에서의 선 · 개도국간 신뢰회복

- 적응 체제 구성, 녹색기후기금 설립 등

III. 신기후협상 출범 과정 (2)

4. 2011.12월 남아공 더반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협상 출범 합의

- Post-2020 체제 협상을 2015.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적용기로 합의

5. 2012년 도하 총회에서 2020년까지 과도기 체제 유지합의 (KP 2차 공약기간 연장)

IV. 그간의 협상경과: 공식협상

13

1. **협상 무대:** ADP (ad 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)
2. **협상방식:** openness, transparency, party-driven, inclusiveness
3. **ADP 협상 경과**
 - 15 차례의 ADP 협상회의 개최 (2012.5월-2015.12월)
 - 2014.6월 문안협상을 위한 ADP Contact Group 구성
 - ADP회의를 통해 새로운 개념인 'INDC' 방식 합의, INDC의 범위 등 성과 도출(COP 19,20 결정문)

IV. 그간의 협상경과: 비공식협상

14

❖ 핵심 국가 중심의 고위급 비공식 협의체 가동

: 효율적인 논의진행을 위해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일부 국가가 토론형식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

- 주요경제국포럼(MEF) (미국 주도)
 - G7, 중국, 호주, 브라질, 남아공, 사우디, 한국, 러시아 등 17개국
- 피터스버그 기후변화 각료급 대화 (독일 주최)
- 기후변화 각료급 라운드테이블 회의 (EU 주최)
- 카르타헤나 기후대화 (영국 및 호주 주도)

IV. 그간의 협상경과: 협상 그룹

15

- 개도국: G77+중국 (LDC, BASIC, LMDC, AILAC, ALBA, AOSIS, Africa 등)
- 선진국: Umbrella 그룹, EU
- 선진국+개도국: 환경건전성(EIG) 그룹
 - 우리나라를 비롯, 스위스, 멕시코, 리히텐슈타인, 모나코로 구성

V. 평가

- 선·개도국의 명시적 구분없이 모든 국가들이 참여
- CBDR/RC/NC를 기본원칙으로, 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“Progression over time” 의 기본방향성 구축: 감축, 기후재원, 투명성, Global Socktake
- 개도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“Climate Justice” “Mother Earth” 개념 반영
- 국제배출권거래제 허용 등을 통한 국제적 탄소가격제 (Carbon Pricing) 도입 기반 조성

VI. 향후 과제 (1)

1.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대응체계 강화
 - 장기 저배출 발전 전략 마련(2020년제출)
 - 부문별 감축 목표, 해외 감축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 수립(2016-2020)
 - 감축 목표 보고 · 검토 절차 강화에 따른 국내적 준비 체계 구축(2020 이전)
 - 적응계획 이행 및 경험공유

VI. 향후 과제 (2)

2. 후속 조치 준비 및 국제 기후 협력 강화

- 2016년부터 시작되는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에 적극 참여
- 남북협력사업 등 국제시장 메커니즘 적용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 발굴 추진
- 기후기술 협력,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- 2016.4월 개시되는 서명 절차 참여 및 국내 절차 준비